

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1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2년 10월 25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0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power11222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(신금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10. .

발 의 자 : 신금자, 이길호, 신경원,
김귀근, 이우천, 이훈미,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군포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책무 (안 제3조)
- 다. 돌봄 지원사업 (안 제6조)
- 라. 위탁 (안 제7조)

3. 관련법령
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라 지역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이”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아이돌봄서비스”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4. “아이돌보미”란 「아이돌봄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서비스제공기관”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

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아이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서비스제공기관)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.

제6조(돌봄 지원사업)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
2.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
3.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「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지도·점검)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운영, 시설 및 설비기준, 안전사고 예방, 종사자 관리,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